

지관전규정

제 정 : 2003. 10. 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법인정관 제74조에 의거하여 이 대학교에 설치한 금강대학교 지관전(이하 “지관전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지관전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정신수양과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제2장 구 성

제3조(직제) 지관전에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둔다.

1. 원 장 1인
2. 교법사(敎法師) 약간인
3. 카운슬러 1인
4. 직 원 약간인

제4조(자격) ①원장은 대한불교천태종 승려 또는 부교수이상의 불교문화학부 교원으로 보한다.

②교법사(敎法師)는 대한불교천태종 법사자격을 갖춘 승려이거나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상신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필요시 1인을 상근법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③카운슬러는 불교학 또는 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 포교활동 및 카운슬링을 한 자로서 원장의 상신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④직원은 대한불교천태종 신도로서 지관전 포교활동 지원 및 제반 업무처리를 위하여 두며 직원인사규정에 준하여 임명한다.

제3장 업 무

제5조(사무분장) 지관전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

1. 교내 종교행사의 주관
2. 종교 및 신상상담
3. 관음정진법회(觀音精進法會) 및 종교 강좌 개최
4. 교내 법당의 운영관리
5. 기타 지관전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업무보고) 원장은 매월 1회 이상 총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세칙) 지관전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제4장 위원회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지관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위원장은 지관전원장이 겸임한다.

③위원은 불교학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규정 및 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지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의결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11조(자문위원) ①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자문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자문위원은 지관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